

EU의 친환경 속도조절: 옴니버스 패키지의 의미

저자 : 김민성



EU가 추진해온 친환경 규제에 숨고르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EU 집행위, 친환경 정책 속도조절 제안
-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대상 축소, 시행 연기
- 공급망 실사지침: 직접 협력사 한정, 주기 완화
- 탄소국경세: 대상 축소, 일부 간접배출량 제외
- 옴니버스 패키지의 구상 배경과 향후 전망
- ESG 내실을 다지는 시점으로 활용할 때

EU 집행위, 친환경 정책 속도조절 제안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는 ESG 규제의 간소화 및 완화 조정안을 담은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타국 대비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요 ESG 규제들의 유사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비례화(Proportionality: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와 단순화(Simplification: 보고 기준 간소화) 원칙을 적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정은 EU의 일관된 친환경 정책 흐름 속에서 규제 속도를 조절하는 접근이다. EU는 2019년 EU Green Deal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55%(1990년 대비) 감축 목표 수립, 2021년 Fit for 55 패키지 발의 등 그동안 친환경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글로벌 ESG 규제를 선도해 왔다. 아직 주요 내용의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옴니버스 패키지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정책의 근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계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의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EU 옴니버스 패키지 구성

구분		옴니버스 제안
옴니버스 I	옴니버스 I-1 (Stop-the Clock)	①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 공급망 실사지침의 시행 시기 연기
	옴니버스 I-2 (Simplification)	②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 공급망 실사지침 내용 개정 (EU Taxonomy에 대한 규정 간소화 포함)
		③ 탄소국경세 내용 개정
옴니버스 II		④ InvestEU 등 투자 프로그램 관련 규정 개정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옴니버스’의 의미는 ‘모든 이를 위한’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독립적인 법률 조항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패키지는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시행 연기와 내용 개정 ▲탄소국경세(CBAM)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대상 축소, 시행 연기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은 기업이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제는 2023년에 발효되었으며, 올해 초부터 주요 대기업 대상으로 시작되고 단계적 확대가 예정되어 있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직원 수 500명 이상 기업은 올해 공시부터, 직원 수 250명 이상 기업은 내년 공시부터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3국 기업에는 별도의 매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산업별로 세분화된 보고 기준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 공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옴니버스 패키지는 이러한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보고 대상이 직원수 1,000명 이상인 대기업으로 제한되고, 매출 기준도 완화되어 당장 적용될 기업 대상이 약 80% (5만개→1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원 수 250명 이상 1,000명 미만 기업들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8년 공시부터 보고하도록 제안했다.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도 개편하여 기업이 수집해야 할 데이터 항목을 축소하고, 산업별 세분화된 보고 표준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기업들은 기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시 요건만 고려하면 되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 제안은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설비 및 에너지 투자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것이며, 중소기업들이 보고 의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급망 전체에 걸친 탈탄소화 노력이 분절될 위험이 있다. 또한 그린워싱 방지와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원래의 목적이 희석되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양질의 ESG 정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관련 주요 사항

구분	현행	옴니버스 제안
적용 대상 (시행 시기)	• 임직원 500명 ↑ ('25) • 임직원 250명 ↑ ('26)	• 임직원 1000명 ↑ ('25)* • 임직원 250명 ↑ ('28)
주요 내용	• 산업별 세분화 기준 적용 • Scope 1, 2, 3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 산업별 보고 기준 폐지 • 중소기업 및 임직원 1000명 이하 대기업 Scope3 보고 면제

* EU 기업은 순매출액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초과 기업 한정. 제3국 기업은 EU 내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 대기업으로 분류된 자회사 보유

공급망 실사지침: 직접 협력사 한정, 주기 완화

공급망 실사지침은 EU 기업과 EU 내 매출 발생 제3국 기업에 환경·노동 관련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 훼손 및 인권 침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제는 작년에 발효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1년 단위로 적용 기업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업이 직접 협력사(1차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간접 협력사(2차, 3차 등)를 포함하여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직접적인 경영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옴니버스 패키지에서는 실사 의무의 범위가 직접 협력사(1차)로만 축소되는 변화를 제안했다. 다만,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 협력사도 실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대기업들의 시행 시기도 2028년 7월로 1년 유예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공급망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빈도 역시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다. 여기에도 단서 조항이 붙어, 실사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확보될 때마다 추가 실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로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일정 부분 감소하여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실사지침 관련 주요 사항

구분	현행	옵니버스 제안
적용 대상 (시행 시기)	• 순매출 1.5B 유로 & 임직원 5,000명 ↑ ('27.7) • 순매출 0.9B 유로 & 임직원 3,000명 ↑ ('28.7)	• 순매출 0.9B 유로 & 임직원 3,000명 ↑ ('28.7)
주요 내용	• 실사범위: 직접(1차), 간접(2차, 3차 등) 포함 • 실사 모니터링 주기: 1년	• 실사범위: 직접(1차)만 포함 간접은 객관적 정보 보유 시 수행 • 실사 모니터링 주기: 5년

이번 규제 완화는 공급망 전체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리 체계를 일부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접 협력사에 대한 실사 의무 완화로 인해 개도국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ESG 압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실사 의무와 리스크 발생 시 추가 점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 실사 활동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 대상 축소, 일부 간접배출량 제외

탄소국경세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EU로 수출되는 상품 중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직·간접적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제는 2023년 5월에 발효되어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시범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관세 부과를 통해 본격 도입될 예정이었다. 현행 규정에서는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에 대한 모든 수입업자를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탄소국경세 관련 주요 사항

구분	현행	옵니버스 제안
적용 대상 (시행 시기)	• CBAM 대상 품목 모든 EU 내 수입업자 ('26)	• 중소기업 및 개인 면제 (연간 50톤 이하 수입 면제)
주요 내용	• '26년 탄소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 직접 / 간접 배출량 합산	• '26년 탄소배출량 보고, 인증서 구매는 '27년 1년 연기 • 일부 품목 간접 배출량 합산 제외 (철강, 알루미늄, 전기 품목)

옵니버스 패키지에서는 배출량 계산 및 보고 요건을 완화하고,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기업의 90%에 해당하는 연간 50톤 이하 수입 중소기업 및 개인을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는 안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수 기준 90%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배출량은 매우 적어 EU 시장에 유입되는 탄소배출량의 99%는 여전히 탄소국경세에 따라 보고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원활한 규정 이행을 위해 인증서의 판매 및 제출 시점 등을 연장하여, 탄소국경세는 2026년 1월에 시행되지만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7년 2월 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해당 제품의 내재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 이행 시점을 1년 정도 늦추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는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서 간접 배출량(Scope2)이 배출량 합산에서 제외된 점이다. 시범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행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해당 품목의 Scope2를 총 배출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 당초에는 Scope3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일부 품목에서 Scope2를 제외하기로 제안하면서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필요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옴니버스 패키지의 구상 배경과 향후 전망

그동안 EU가 친환경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 EU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역내 기업들이 역외 기업들보다 환경 규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높은 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환경 투자를 많이 수행한 역내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EU는 Green Deal을 ‘유럽의 달 착륙 순간’으로 표현하며 미·중 강대국에 맞서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했다. 즉 내수 시장 보호라는 실리와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동시에 추구한 전략이었다.

이처럼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오던 EU가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ESG 규제를 완화한 근본적인 원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EU의 ESG 규제가 글로벌 표준화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EU는 선도적으로 ESG 규제를 도입하여 이것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호응이 미약했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유지하며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고, IRA를 통해 자국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했다. 중국 역시 환경 규제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펼친 것과 달리, EU는 규제 중심의 접근법을 추진하여 글로벌 표준 정책으로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EU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역내 기업들은 생산성과 혁신 측면에서 미국에 뒤처지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 등 아시아 기업들에 밀리는 상황에서,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까지 겪으며 환경 투자 여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ESG 규제들이 짧은 기간에 연달아 도입되면서 ‘규제 피로감’이 확산되고,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EU의 친환경 규제 완화 원인

구분	원인	핵심 내용
외부요인	글로벌 규제 불균형	美中은 인센티브 중심→ EU의 표준화 시도 실패
내부요인	EU 기업 경쟁력 약화	에너지 위기, 경기 침체로 투자 여력↓, 규제 피로감 확산
	정치 지형 변화	보수 극우 정당 득세

셋째, 유럽 내 정치적 지형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작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EU Green Deal에 대한 반발인 그린래시가 일어나며 친기업적이고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유럽국민당의 영향력이 강화됐고, 여러 회원국에서 보수 정당들의 득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EU가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지침과 공급망 실사지침의 시행연기는 Fast track 절차를 밟아 EU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로써 두 개 지침의 시행시기 연기가 확정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탄소국경세 내용 개정도 2025년 5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EU 이사회에서도 최종 승인됐다. 무리 없이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각 제도에 대한 내용 개정은 아직 초안 단계로, 일반적인 EU 규제 제정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 및 채택 과정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과도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 국가들은 기업 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 완화를 적극 지지하는 등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환경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유럽국민당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임기가 2029년까지 4년 남아있고,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이유들로 당분간은 속도조절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SG 내실을 다지는 시점으로 활용할 때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는 EU가 Green Deal 선언 이후 강화해온 ESG 정책 기조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기업들은 규제 완화로 얻은 시간이 ESG 체계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패키지는 당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지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데이터 수집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고, 공급망 실사지침도 문제 발생 시 간접 협력사 실사나 매년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애플 등 글로벌 고객들은 규제와 별개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유예 기간을 데이터 수집 체계 정비, ESG 보고 시스템 고도화, 내부 인력 전문성 강화 등 내실을 다진다면 ESG 체계 구축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탈탄소 솔루션 제공 기업들 사이에서는 차별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산업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동안 탈탄소 솔루션 산업(수소, CCUS, 친환경연료 등)에 다수 기업들이 기회 확보 관점으로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 적용 시기가 완화되면 관련 산업 성장이 지연되고, 비용이나 효율 관점에서 차별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에서 생존할 전망이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의 ESG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태양광, 풍력,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친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 ESG 규제를 속도조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와 미국에서 ESG 규제를 약화하는 동안 중국은 오히려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